

「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증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2차 본회의 (2004. 9. 17)

1. 심사경과

가. 2004. 9. 7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9. 7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35호)

다. 2004. 9. 14 : 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철규)

가. 제안이유

- 보건복지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确定的 「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“국가유공자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”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
-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개정함
 -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⇒ 사천시보건소수가조례
- 보건소 수가 감면 범위를 정함
 -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
 - 국가유공자 · 독립유공자 ·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- 참전 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

다. 법적근거

-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(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)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(보건복지부 지침)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(가료)
-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(의료보호)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(가료)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(...진료 등)

-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(의료지원)
-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(의료보험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가. 동 개정조례 안은 보건복지부의 호국보훈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된 「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」 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“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”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는 개정조례 안으로
- 나.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명인 「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」를 「사천시보건소수가조례」로 개명하고 국가유공자 · 독립유공자 ·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건소수가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
- 다. 입법체계 및 절차, 상위 법령과의 관계, 예산조치여부, 용어 및 조문의 정리, 앞으로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	답 변	
질의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최연조 위 원	○ 현행조례와 개정 조례를 대비 진료비 수입의 차액은?	보건관리과장 김 철 규	○ 현재 진료비는 본인부담 30%, 건강보험 공단부담 70%로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우리시 관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년 이용 인원은 1,800명 정도로 그중 30%가 년 3회 이용한다고 볼 때 우리시 수입은 약 1,500천원 정도 적어지는 실정임

5. 토론요지 : 전원 원안가결 의견동의

6.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